##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응천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10873

발의연월일: 2021. 6. 18.

발 의 자:조응천·강준현·김철민

문진석 • 민형배 • 박상혁

오영환 • 이수진 • 조승래

한병도 • 한준호 의원

(119]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는 2018년 국제철도협력기구(OSJD)의 정회원이 된 이후 20 23년 제51차 국제철도협력기구 장관회의 유치, 한국·미국·중국·러 시아 등 동아시아철도공동체 구상을 제안하는 등 철도분야 국제협력 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철도분야 국제협력은 정부 차원뿐 아니라 대학, 연구기관 등 민간 차원의 협력과 교류도 중요합니다. 현재 철도분야 국제협력은 정부나 철도 관련 공공기관에 한정되어 있어 철도협회, 대학 및 연구기관 등다양한 주체가 참여하여 국제협력·교류 사업을 진행하기가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외국의 철도산업 관련 인력을 초청하여 국내의 선진 철도기술을 알리는 '글로벌 철도연수과정'의 경우도 철도협회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사업추진의 법적 근거가 모호하다는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정부뿐만 아니라 협회, 대학, 연구기관 등 철도분야의 국제협력 대상을 확대하고, 외국인력에 대한 교육·연수, 철도산업 관련 조사·연구, 민간차원의 교류·협력체계 구축 등 사업범위 확대를 통해국가가 민간 차원의 국제협력을 적극 지원하여 철도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더욱 촉진하고자 합니다(안 제13조 및 제38조).

#### 법률 제 호

###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관련 기술 및 인력의 국제교류, 국제표준화, 국제공 동연구개발 등의"를 "다음 각 호의"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 과 같이 신설한다.

- 1. 철도산업과 관련된 기술 및 인력의 국제교류
- 2. 철도산업의 국제표준화와 국제공동연구개발
- 3. 외국의 철도산업 관련 인력에 대한 교육ㆍ연수
- 4. 국내외 대학, 연구기관, 국제기구 및 민간단체 등과 교류·협력체 계 구축
- 5. 국내외 철도산업 관련 조사 · 연구 및 정보의 제공
- 6. 국제 행사(세미나·토론회·전시회 등을 포함한다) 개최
- 7.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철도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38조 본문 중 "정부출연연구기관에게"를 "정부출연연구기관·협회에게"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3조(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촉	제13조(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촉
진) ① (생 략)	진) ① (현행과 같음)
② 국가는 철도산업의 국제협	2
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추진하	
기 위하여 <u>관련 기술 및 인력</u>	<u>다음 각 호의</u>
의 국제교류, 국제표준화, 국제	
<u>공동연구개발 등의</u> 사업을 지	
원할 수 있다.	
<u>&lt;신 설&gt;</u>	1. 철도산업과 관련된 기술 및
	인력의 국제교류
<u>&lt;신 설&gt;</u>	2. 철도산업의 국제표준화와 국
	제공동연구개발
<u>&lt;신 설&gt;</u>	3. 외국의 철도산업 관련 인력
	에 대한 교육・연수
<u>&lt;신 설&gt;</u>	4. 국내외 대학, 연구기관, 국제
	기구 및 민간단체 등과 교류
	<u>· 협력체계 구축</u>
<u>&lt;신 설&gt;</u>	5. 국내외 철도산업 관련 조사
	•연구 및 정보의 제공
<u>&lt;신 설&gt;</u>	6. 국제 행사(세미나・토론회・
	전시회 등을 포함한다) 개최
<u>&lt;신 설&gt;</u>	7.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철도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
	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38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국 지 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 지사 또는 지방교통관서의 장에 위임하거나 관계 행정기관·국가철도공단·철도공사·정부출연연구기관에게 위탁할 수있다. 다만, 철도시설유지보수시행업무는 철도공사에 위탁한다.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38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경
부출연연구기관·협회에게
<b>.</b>